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8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64521 손해배상(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김민재, 허진민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C

2. D

3. E

4.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지 담당변호사 황혜진, 장현지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가단528639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0. 24.

판 결 선 고 2025. 11. 14.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C는 20,333,333원, 피고 D, E, F는 각 13,555,5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C는 17,933,333원, 피고 D, E, F는 각 11,955,5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들이 각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의 증거 조사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 및 그에 따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6쪽 1행 "소멸시효 진행은 모두 중단되었다."를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쪽 12행 "원고의"를 "B의"로 고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각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가 포괄하여 1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구성한다. 이 사건 수필을 반복적으로 복제·배포한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B의 불법행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불법행위로 보아야 하며, 복제·배포 행위가 최종적으로 종료된 2023. 2. 23.부터 10년의 장기소멸시효를 기산하여야 한다.

나) 불법행위 피해자인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장기소멸시효는 피해자인 원고가 손해를 인식할 수 있게 된 2022. 11. 3.부터 진행되어야 한다.

다) 원고는 2023. 2. 23. B에게 인세 부당이득과 저작권법위반을 이유로 한 위자료로 5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행을 최고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2023. 7.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최소한 2023. 2. 23.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2013. 2. 24.부터 2023. 2. 23.까지의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N가 B를 대리하여 2023. 1. 5.과 2023. 2. 8.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이전까지의 인세를 정산하고 향후 출판계약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설령



B의 대리권 수여가 없었다 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B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채무승인을 통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마) 원고가 어릴 때 G이 사망한 점, G 사망 당시 원고의 부모는 이혼한 상태였고, 원고는 이후 외가와 교류가 적어진 점, 원고가 성년 이후 외국에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고, B는 인세 정산의사를 밝히는 등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으며, 상당한 기간 불법행위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바) 원고가 별도의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권리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고, 침해자의 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고 계산한 한계이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출판사들과 비교하더라도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은 과소하다.

사) 이 사건 수필에는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겨 원고의 고유한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¹⁾

2) 피고들

가)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소 제기 시로부터 3년 전에는 이 사건 서적의 출판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단기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1) 원고는 제1심에서는 저작재산권 침해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그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가 항소심에서는 사생활 비밀의 침해를 주장하였다. 사생활 비밀의 침해를 이유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별도로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어 재산적 손해가 발생함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별도로 사생활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새로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나) 제1심판결의 손해액은 지나치게 과도하게 산정되었다.

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멸시효 기산점

가)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손해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각 손해를 안 때부터 각별로 진행되고(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35 판결 참조),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도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각별로 진행된다.

나) B는 이 사건 수필을 이 사건 서적을 출판하는 형태로 수회에 걸쳐 복제·배포하였고, 저작권 침해의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배포'란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3호). 도서원장(갑 제10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수필의 각 출고일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각 출고일에 배포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특정할 수 있어, B의 복제·배포로 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각각 발생한 때로부터 각별로 진행된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복제·배포가 종료된 2023. 2. 23.로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의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민법 제766조 제2항). 원고가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의 완화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권리가 성립하는지 객관적으로 불명확하거나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로서 불법행위가 이미 성립하였으나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으로 알 수 없었던 경우에 불과한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설령,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을 달리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2022. 11. 3.에서야 원고가 이 사건 수필에 관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인식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중단

이행의 최고는 채무자에 대한 의사의 통지인데 원고가 2023. 2. 23. 발송하여 B에게 이행을 최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증명우편은 N를 상대방으로 한 것일 뿐이고, 채무자인 B에게 의사의 통지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시효이익 포기

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는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채무승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관념의 통지이다. 시효이익 포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알면서 이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의사표시이다. 이처럼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효과의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법적 결과를 채무자의 자기 결정에 따라 정당화하는 시



효이익 포기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는 채무승인 행위에는 요구되지 않는 요소이므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다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6, 19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주장하는 2023. 1. 5.과 2023. 2. 8. 각 내용증명은 지난 기간에 대한 인세를 일부 정산하거나 새로운 출판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인 점, 각 내용증명은 피고 D이 N의 공동대표로서 발송한 것이고, N는 B의 손해배상채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각 내용증명에 N의 공동대표인 피고 D이 B를 대리하여 채무를 승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기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내용증명을 피고들이 B를 대리하여 채무를 승인하는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표현대리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설령 채무를 승인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각 내용증명의 기재만으로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출판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을 뿐,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면서도 이로 인한 시효이익을 포기하겠다는 효과의사를 나타낸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권리남용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개인적으로 권리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는 주관적 사유에 불과하고, 앞서 본 것처럼 B가 시효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당연히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 제도의 효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일부 소멸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평등한 경우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권리남용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정신적 손해 위자료

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707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주장처럼 B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장기간 이루어졌다거나 원고가 그 침해행위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였다는 개인적 사정이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이 사건 서적('H', 갑 제9호증) 중 원고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78쪽부터 80쪽의 내용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만으로는 원고의 고유한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그 내용의 내밀한 정도, 분량 등에 비추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B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단기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588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시로부터 3년 전에 B가 이 사건 서적을 출판하고, 이 사건 서적의 출판으로 저작권이 침해되었으며, 원고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와 피고들의 손해액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저작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침해행위로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액을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고(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저작권자는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2)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서 정한 '이익'은 매출액에서 침해자가 지출한 각종 비용을 공제한 이익을 의미하고, 실제 손해가 그 이익액에 못 미치는 것이 밝혀질 경우 추정은 복멸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 주장과 같은 한계이익, 즉 매출액에서 변동비만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한 이익액은 B가 지출한 고정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실제 권리 침해기간 B가 얻은 영업이익과 큰 차이가 있다. 또한 한계이익을 그 이익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J의 손익계산서를 통해 이 사건 서적과 관련한 한계이익을 명확히 산출하기 어렵고, 원고가 적용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보고서의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업종의 '변동비 대 매출액' 수치는 이 사건 서적의 출판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와 피고들이 각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서적에 관하여 지출된 각종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서적에 대한 저작권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저작권법 제125조를 근거로 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4)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이 사건은 앞서 본 것처럼 B의 이 사건 서적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 제1심 법원이 B가 고의로 이 사건 서적을 출판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점,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상당히 긴 시간 계속된 점, 이 사건 서적의 확인되는 판매실적과 판매가격, 저작재산권 침해 기간



B가 얻은 영업상 이익, 출판계에서 작가들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인세율과 N가 새로운 출판계약을 제안하며 제시한 인세율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720만 원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5) 원고와 피고들의 손해액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신영희

 판사 정인재